

의안번호	2125685
의 퇴 인	용혜인 의원
회 답 일	2023.12.28.
추계번호	23B49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주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할 경우 발생하는 재정수입변화(과태료 수입 감소)는 2025년 3,000만원, 2029년 3,0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억 5,100만원(연평균 3,000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과태료 (안 제39조제3항제3호)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한 과 태료 규정 삭제	-28	-28	-28	-28	-28	-142	-28
과태료 (안 제39조제6호)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대 한 과태료 규정 삭제	-2	-2	-2	-2	-2	-9	-2
합계	-30	-30	-30	-30	-30	-151	-30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벌금 부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벌금 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재정수입의 증가액은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려하지 않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제1호 의2(정의) 신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u>1의2. “불리한 처우”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제10호</u> <u>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u>	의무규정
2	안 제18조의2 제1항(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 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u>10일의 유급 휴가</u> <u>를 주어야 함</u> 이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u>구에 대하여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한 것으로 봄</u>	
3	안 제19조제1항(육아휴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함. 근로자의 신청에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의무규정
4	안 제29조의6(이행강제금) 신설	노동위원회는 제29조의3(제29조의5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제1항)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함(제3항) 노동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5	안 제37조제4항제3호의2 및 제4호의2(벌칙) 신설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4항) 3의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의무규정
6	안 제39조 제3항제3호 및 제6호(과태료)	삭제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2조제1호의2(정의) 신설	—	(미대상) 개정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18조의2제1항(배우자 출산휴가)	—	(미대상)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에 대하여 이를 허용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를 허용한 것으로 의제하는 내용이나,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¹⁾ ,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²⁾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어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	안 제19조제1항(육아휴직)	—	(미대상)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청구에 대하여 이를 허용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를 허용한 것으로 의제하는 내용이나,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³⁾ 허용하지 않을 경우를 제한적으로 두고 있고 ⁴⁾ ,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⁵⁾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어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4	안 제29조의6(이행강제금) 신설	—	(미대상) 현행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재정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재정수입의 증가액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⁶⁾ 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함

1)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제39조(과태료)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5	안 제37조제4항제3호의2 및 제4호의2(별칙) 신설	—	(미대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경우 벌금 수입이 증가할 수 있음. 그러나 재정수입의 증가액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6	안 제39조 제3항제3호 및 제6호(과태료)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동 개정안은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56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함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함
 - 참고로, 개정안의 부칙은 과태료 규정에 대해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 개정안의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37조제4항 및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 5)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제1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 6) 제2조(정의)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생략)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 조항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주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삭제될 경우 과태료 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변화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3호 및 제6호의 삭제로 인한 다른 과태료 수입의 감소액이므로, 추계기간(2025~2029년) 동안 과태료 수입의 감소액은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을 토대로 산출
 - 추계기간 동안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한 과태료 수입 감소액은 배우자출산휴가급여에 대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지원이 2019년 말 시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근 3년간 과태료 수입액의 평균값을 준용하여 산출
 - 추계기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과태료 수입 감소액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과태료 수입액의 평균값을 준용하여 산출
 - 개정안에 따라 과태료를 벌칙(벌금형 포함)으로 대체할 경우 벌금 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재정수입의 증가액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려하지 않음

[표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과태료 수입액: 2018~202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과태료(제39조제3항제3호)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한 과태료 규정	—	—	9	7.5	68.5	28
과태료(제39조제3항제6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과태료 규정	0	4	0	3	2.4	2

자료: 고용노동부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주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할 경우 발생하는 재정수입변화(과태료 수입 감소)는 2025년 3,0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억 5,100만원(연평균 3,000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됨

[표 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과태료(안 제39조제3항제3호)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한 과태료 규정 삭제	-28	-28	-28	-28	-28	-142	-28
과태료(안 제39조제3항제6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과태료 규정 삭제	-2	-2	-2	-2	-2	-9	-2
합계	-30	-30	-30	-30	-30	-151	-30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벌금 부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벌금 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재정수입의 증가액은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려하지 않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2018~2022년 과태료 수입을 토대로 추계한 것이므로 실제 재정수입 변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이현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